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2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곽규택 · 이현승 · 정성국
박수영 · 나경원 · 윤영석
박준태 · 조배숙 · 주진우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특화사업의 집적·고도화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연구개발·투자유치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이전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 육성·투자유치·연구개발 등 후속 기반을 뒷받침할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됨.

이에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사항”을 “사항 및 해양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촉진함으로써”를 “촉진하고 해양산업을 진흥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란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개선 및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특화지구”를 “혁신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개선”을 “개선 및 해양산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특화지구”를 “혁신지구”로 한다.

5.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시설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해사 법률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항만 플랫폼,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구축
2. 자율운항선박, 해양로봇, 해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AI 기반 해양예측·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4. 디지털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대학원·훈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증 및 규제 적용 특례 부여

제14조(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
는 혁신지구 내에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입주를 위하여 적
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
제상의 지원
2.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 등 지원
3.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기술보증 및 창업투자 등의 금융지원
4. 인건비 보조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과 내용,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외 연구
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
제상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
2.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
축

3. 외국어 기반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4. 국제 해양박람회, 해양글로벌 기술포럼 및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의 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해양글로벌 투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u>사항</u>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u>촉진함으로써</u>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u>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 ----- ----- -----<u>사항 및 해양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u>----- ----- -----<u>촉진하고 해양산업을 진흥함으로써</u>----- ----- -----.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u>”란 <u>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u> 제10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조성) ① -----
-----개선 및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

② 혁신지구-----
-----.

1. ~ 4. (현행과 같음)

5.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시설

6. -----개선 및 해양산업 지원-----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지구-----

-----.

제12조(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해사

<신 설>

법률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혁신지구
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
베드(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
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
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
진할 수 있다.

1.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
항만 플랫폼,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구축
2. 자율운항선박, 해양로봇, 해
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AI 기반 해양예측·수산자
원관리 시스템 구축
4. 디지털 해양인재 양성을 위
한 전문대학·대학원·훈련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산업융합 촉진법」, 「스
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신 설>

<신 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
증 및 규제 적용 특례 부여
제14조(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등
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부산
광역시는 혁신지구 내에 민간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입주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2.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의 감면 및 장기 임대 등 지
원
3.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기
술보증 및 창업투자 등의 금
융지원
4. 인건비 보조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과 내용,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
교류 확대) ① 국가와 부산광

제12조(예산 지원) (생략)

역시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

2.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외국어 기반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4. 국제 해양박람회, 해양글로벌 기술포럼 및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의 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해양글로벌 투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 지원) (현행 제12조

	와 같음)
--	-------